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규정(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가 필요한
추가 정보 명시(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라. 위기청소년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
보시스템과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 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소득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
- 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대상 및 내용과 선정 기준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 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청소년부모 지원 등 예산 수반 사항은 '22년에 반영
- 다. 합 의 : 000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4호 중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복지심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3.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신청

4.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2.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 관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정보 중 심리취약한 청소년 병역의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처리기준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한다.

④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해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상담기관, 상담일자, 상담주제 등 최소한의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제3호 중 “제97조제1항제1호”를 “제96조제1항제1호·제97조제1항제1호”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특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중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2(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지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 청소년 한부모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하는 생활도움지

원과 통합사례관리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중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청소년부모에게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
3.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청소년부모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4. 독립적인 법률행위의 제약 및 폭력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다. 다만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 제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18조 제6호 중 “청소년 가출 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으로 한다.

별표2의 제1호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센터의 장,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 근무) 및 제2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센터의 장,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 근무)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u>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u>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u>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u>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u>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 보호시설 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경찰관서: <u>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u> 6. ~ 10. (생략)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u> ----- ----- -- 6.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u>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u> 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 --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u>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현 행	개정안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u>운영위원회</u>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u>심의위원회</u> ----- ----- --
<신 설>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u>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u> 2. <u>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지원</u> 3. <u>위기청소년 관련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신청</u> 4. <u>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관리</u>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u>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현 행	개정안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정보 중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2.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 관한 정보 중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현 행	개정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정보 중 심리취약한 청소년 병역의 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중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현 행	개정안
	<u>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처리기준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한다.</u> ④ <u>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위해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정보를 조회할 경우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상담기관, 상담일자, 상담주제 등 최소한의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u> ⑤ <u>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3. -----

현 행	개정안
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u>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제96조제1항제1호·제97조제1항제1호----- ---<u>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u>----- ----- ----- -----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u>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① -----
1. ~ 3. (생략)	-----
② (생략)	-----
<신설>	----- <u>청소년</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u>

현행	개정안
	<u>대상 결정 등 특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u>
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 ----- ----- ----- <u>심의위원회</u>----- ----- ----- ----- ----- ----- ----- -----. ② ~ ④ (생략)
<신설>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현 행	개정안
	따른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지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제1의2호 청소년 한부모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하는 생활도움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말한다.

현 행	개정안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중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청소년부모에게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 3.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청소년부모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4. 독립적인 법률행위의 제약 및 폭력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

현 행	개정안
	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	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현 행	개정안
컴퓨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소년컴퓨터 계속 이용)----- ----- ----- -----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 ----- -----.

현 행	개정안
1. ~ 3. (생략) <u><신설></u> 4. ~ 5. (생략)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7. ~ 9.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u> 4. ~ 5. (현행과 같음) 6. -----<u>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u>----- ----- 7.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72